

HPAI 재입식

HPAI 마지막 발생후 최소 3개월 뒤 입식가능



본 고에서는 AI 종식이후 농가들이 재입식 절차요령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메뉴얼」에 실린 사후관리와 재입식 요령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게재하였다.

HPAI가 발생한 위험지역 내에서 다시 재입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즉, AI의 최대 잠복기가 3주이기 때문에 최종 살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추가 발생이 없으면 3주후에 위험지역은 경계지역으로 전환되고, 이후 1달간의 상황을 지켜본 후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 조치가 추가로 해제된다. 이동제한 조치가 풀렸다고 해서 AI발생지역에서 재입식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동제한 조치가 풀린뒤 21일간의 입식시험을 거쳐야 하고 시험사육뒤 검역원에 21일간의 정밀 검사를 받은 후에 비로소 입식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추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난 5월 12일 경남 양산지역에서 마지막 발생되었으므로 3km이내 가금산물을 모두 폐기처리 한 5월 22일부터 최소 3개월이 흐른 8월 20일 경에야 비로소 입식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AI 청정화도 이 시기 전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점검 · HPAI발생 총 점검 |

1. 위험 · 경계지역의 방역규제 해제 및 발생종식 선언

1) 위험지역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외의 돼지는 검사 후 양성일 경우 살처분)에 대한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위험지역을 경계지역으로 전환하고 경계지역의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

2) 경계지역

경계지역(오염지역 · 위험지역을 포함) 안의 감수성 동물에 대한 이동제한은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대한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경계지역 안의 닭(임상검사, 필요시 혈청검사 · 분변검사)과 오리(혈청검사, 필요시 분변검사)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사육형태, 발생

상황 교통 · 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계지역의 이동제한조치의 해제를 위한 혈청검사의 실시 횟수는 1회로 하며 이상이 있거나 역학적으로 추가 혈청검사가 필요로 판단되는 때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모든 방역지역에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된 때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으며 발생 종식 시 그 결과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통보하게 된다.

2. 입식시험 실시요령

1) 입식시험의 준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등 입식시험 단계별 조치(표1)에 따라 발생농장(예방살처분 농장중 양성판정농장 포함)에 대한 입식시험 계획을 수

표1.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등 입식시험 단계별 조치사항

단계별	준비사항 및 조치사항
1단계 (시험입식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시 · 군에서 시험가축 입식에 따른 제반사항 계획수립○ 시험가축 입식전 발생농장 등에 대해 입식시험과 관련한 설명회 개최 등 충분한 지도 · 교육 실시 - 방역조치요령, 협조사항 및 세부추진계획
2단계 (농장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가축 입식전 발생농장 등에 대한 청소 및 소독실시 - 소독대상 : 축사내외, 진입로, 농장내 사택, 축산기구 등 농장과 관련되는 모든 것※ 기본적으로 “제4장 6. 청소 · 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되 축사바닥, 갈라진 틈 등에 존재하는 분뇨 및 오물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브러쉬, 수세미 등을 소독액에 담가 가면서 세척 · 소독작업을 실시하고, 축사천장 등은 고압세척기(분무기)를 이용하여 소독액에 축사가 완전히 젖도록 할 것이며, 축사내는 훈증소독 실시
3단계 (시험가축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가축 선정 및 구입 - 입식품종 및 연령 등 입식가축의 제반조건 검토 · 확인-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6~12주령 병아리를 선정- 구입예정 가축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 · 혈청검사 등 실시
4단계 (시험입식농장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가축 입식전 발생농장 등에 대한 점검실시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소 · 소독상태 및 시험축 최종 임상 확인점검※ 농장 점검결과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오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입식시험 추진
5단계 (시험가축임상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가축에 대한 정기적 임상관찰 및 점검표 작성 · 기록유지 : 축사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점검표 기록관리- 입식후 14일까지 2일간격, 15일부터 21일까지는 주2회 실시- 임상관찰기관 : 관할 가축방역기관(축산위생연구소 등)※ 조류인플루엔자 유사증상 발견시 해당 시 · 군, 시 · 도 및 검역원에 신속보고(통보)
6단계 (시험결과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가축 입식시험 종료 즉시(3주후) 시험축에 대한 혈청검사 의뢰 및 검사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재입식 조치

* 입식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살처분 농가에 대하여도 발생농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철저하게 소독하고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오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입식 허용

립하고, 발생농장 소유자 등에 대해 소독·시험·가축선정·검가 등 입식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또한 해당 농장의 소유자등은 축사내외·진입로·농장내 사택·축산기자재 등에 대한 청소·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입식시험전 점검표에 따라 해당 농장에 대한 청소·세척 및 소독상태, 오염물건 처리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보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시험 닭의 선정

입식시험에 사용되는 닭(이하 시험 닭)은 조류 인플루엔자 비발생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건강한 닭이어야 하며 시험가축은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임상검사 및 검역원의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시험가축은 가장 감수성이 높은 축종인 닭을 사용하며 계사당 산란계 중추(6~12주령) 최소 5수 이상(단, 계사 규모별 시험수수 증가)으로 한다.

3) 입식시험의 방법

입식시험은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된 후 발생농장에 대한 분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실시한다. 발생농장의 소유자 등은 시험가축의 구입장소·구입일자·운송방법 및 사육일자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발생농장의 소유자 등은 사료를 축사바닥에 두어 급여하는 등 시험축이 발생농장 안의 오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장소 또는 부위에 접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산란계·종계 등 케이지 내에서 사육하는 축사의 경우 시험가축을 이동식 케이지에 넣은 채로 축사내를 이동



시키면서 오염 가능성이 있는 부위에 자주 접촉 되도록 하거나 케이지 내에서도 사육시키는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입식시험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한다.

입식시험 기간은 최대 잠복기를 감안하여 3주간으로 하며 가축방역관은 입식시험을 개시한 후 14일까지 매 2일마다, 15일부터 21일까지는 주 2회 시험가축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임상검사를 내역으로 기록해야 한다.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입식시험 개시일로부터 3주 경과 후 혈청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검역원장에게 정밀점사를 의뢰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가축의 재사육이 허용된다.

농가에서는 종식선언시까지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가에서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양계